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-122호

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 승인 고시

1.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 일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0-80호, (2020. 07. 14.)로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-104호(2021. 07. 01.)로 사업계획변경 고시되었으며,
2. 청계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계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국·공유지 매각 관련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있어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1년 07월 22일

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

1. 사업의 명칭: 청계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

2. 사업주체

가. 성명 및 주소

청계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영재
(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42길14, 세림아파트상가동 201호)
에스케이건설(주) 안재현, 임영문
(서울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)

3. 사업개요

- 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 일원
- 나. 대지면적: 7,375.00㎡
- 다. 건축규모: 지상 34층, 지하 5층 공동주택 3동 3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- 라. 사업계획승인: 2020. 04. 28.

구 분	규 모			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사업비 (천원)	사업기간 (사용검사 예정일)
	층수 (지상/ 지하)	동	세대수							
아 파 트	34/5	3	396	8,737.0	3,719.4	57,927. 0476	50.43	499.38	169,185,240	2025.03

마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 따른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변경

4. 사업시행기간 : 착공 후 40개월

5.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

가.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
나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의 결정(변경)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

※ 기타 의제 사항 표기 생략

6. 변경내용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 따른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1) 지정: 미포함

2) 변경

○ 관리청 무상귀속: 1,362.0㎡(도로)

○ 국·공유지 무상양도: 528.4㎡(도로)

연번	소유자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무상양도 대상여부			비고
							계(㎡)	무상양도(㎡) (공공시설)	유상매각(㎡) (공공시설 외)	
공유지(구유지) 합계					685.4	685.4	685.4	528.4	157	
1	성동구	용답동	126	도로	538.9	538.9	538.9	462.3	76.6	
2		용답동	126-6	도로	42.6	42.6	42.6	42.6	—	
3		용답동	125-16	도로	23.5	23.5	23.5	23.5	—	
4		용답동	125-9	도로	80.4	80.4	80.4	—	80.4	

7. 관계도서 : 생략[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286-6582)에 비치함]